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70 발의연월일: 2025. 4. 23.

발 의 자:서왕진・임호선・정춘생

황운하 · 김준형 · 김선민

박은정 • 차규근 • 강경숙

신장식 • 이해민 • 백선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는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해당 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0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운용을 맡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 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 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
	부장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
	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u>한다.</u>